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7.13일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7.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해피해상황을 지속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별첨]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효빈 (02-2100-2862)
		담당자	주무관	김진주 (02-2100-2866)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02-2100-2952)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
		담당자	사무관	윤세열 (02-2100-2945)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이민형 (02-2100-2996)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책임자	팀 장	안남기 (02-2100-1660)
		담당자	사무관	정형준 (02-2100-1661)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송병관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목정민 (02-2100-2613)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양운영 (02-2100-2920)
		담당자	사무관	문성배 (02-2100-2936)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책임자	국 장	김충진 (02-3145-8300)
		담당자	팀 장	강병재 (02-3145-800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최동우 (02-3145-802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임자	국 장	노영후 (02-3145-7460)
		담당자	팀 장	황기현 (02-3145-7450)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박상만 (02-3145-7550)
		담당자	팀 장	김범준 (02-3145-7447)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곽범준 (02-3145-6770)
		담당자	팀 장	이장희 (02-3145-6772)
	은행연합회	책임자	본부장	박영상 (02-3705-5070)
		담당자	부 장	이종혁 (02-3705-5339)
		담당자	팀 장	유미라 (02-3705-5389)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천승환 (02-2262-6697)
		담당자	부 장	유제상 (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김지훈 (02-3702-8524)
		담당자	부 장	방병호 (02-3702-8530)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김생빈 (02-397-8603)
		담당자	부 장	백운석 (02-397-8610)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본부장	김민기 (02-2011-0711)
		담당자	부 장	오승환 (02-2011-0723)
	신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조용록 (042-720-1860)
		담당자	팀 장	한동권 (042-720-1871)
	농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김민자 (02-2080-5056)
		담당자	팀 장	이은종 (02-2080-3122)
		담당자	팀 장	김구술 (02-2080-3161)
	수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송효진 (02-2240-2260)
		담당자	팀 장	오상우 (02-2240-2102)
	산림조합중앙회	책임자	부 장	김경희 (02-3434-7230)
		담당자	팀 장	강대민 (02-3434-7231)
	새마을금고중앙회	책임자	부문장	이종성 (02-2145-9120)
		담당자	부 장	박광복 (02-2145-9481)

1 지원 내용

가. 수해 피해 가게 금융지원

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 ①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상호금융업권(예시) >

-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 : 피해 개인 대상(최대 2천만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 하나은행 :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최대 5천만원) 지원 등
- 농협은행 :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원) 지원 등
- 기업은행 :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등
- 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3천만원) 지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게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 국민은행 : 만기연장 지원(최고 1.5%p내 우대금리 제공) 및 연체이자 면제*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납입 限
- 신한은행 : 만기연장 지원(최고 1.5%p내 우대금리 제공) 및 연체이자 면제

- 우리·하나·경남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금리우대(최고 1.0%), 상환유예 지원 등
- 농협은행 : 만기연장,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 기업은행 : 만기연장(최대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등
- 부산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 지원 등
- 카카오뱅크 : 신용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 토스뱅크 : 기존대출 상환유예

< 카드사(예시) >

- 쉐카드사 : 최대 6개월 청구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 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연장
- 신한카드 : 청구유예 후 6개월 분할상환 지원

< 상호금융업권(예시) >

-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수협 : 분할상환원금 또는 이자일부 상환유예(만기이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 생보·손보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 *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보장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손보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iM뱅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나.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은·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

○ 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100%, 보증한도 5억원)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 피해상인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최대 5억원) 및 특별우대금리 제공

②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③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 금번 수해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20.4월 ~ '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대상

2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각 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입니다.
-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 1332	강릉	☎ 033-642-1904
부산 울산	☎ 051-606-1700,1701	경남	☎ 055-716-2330
대구 경북	☎ 053-760-4000	제주	☎ 064-746-4200
광주 전남	☎ 062-606-1600	전북	☎ 063-250-5000
대전·세종·충남	☎ 042-479-5151,5154	강원	☎ 033-250-2800
인천	☎ 032-715-4890	충북	☎ 043-857-9104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수출입은행	☎ 02-3779-6259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농협중앙회	☎ 1661-2100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협중앙회	☎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새출발기금	☎ 1660-1378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3 유의사항

- ①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②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②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③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즈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